제156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7.(화)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 경과

가. 발 의 일: 2026. 10. 15.
나. 발 의 자: 전태완 의원 등 36명
다. 회부일자: 2026. 10. 20. (의안번호 제83호)
라. 상정 및 의결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2. 제안설명 요지 (전태완 의원)

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관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.(안 제1조 및 제2조)
나.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사항.(안 제3조 및 제4조)
다. 사전고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.(안 제5조)
라.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.(안 제6조)
마. 사전고지 업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.(안 제7조)

4. 참고 사항

○ 관계 법령 등 (안건책자 참조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정이)

□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앞서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**【안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정의)】**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,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허가등 처리 전에 관련 정보를 알리는 사전고지의 의미를 규정함.

○ **【안 제3조(사전고지 대상 시설)】**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함.

	시설 종류 ※ 조례안에서 인용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해당시설		규모
1.	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	나. 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다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 라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 마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 바. 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 아.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. 화약류 저장소	1,000㎡ 이상
2.	동물 관련 시설	가. 축사(양잠·양봉·양어·양돈·양계·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) 나. 가축시설[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(管理舍)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] 다. 도축장 라. 도계장	500㎡ 이상
3.	자원순환 관련 시설	가. 하수 등 처리시설 나. 고물상 다. 폐기물재활용시설 라. 폐기물 처분시설 마. 폐기물감량화시설	500㎡ 이상
4.	방송통신시설 (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)	마. 데이터센터	1,000㎡ 이상
5.	묘지 관련 시설	가. 화장시설 나. 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라. 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(乾燥葬)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	1,000㎡ 이상
6.	장례시설	가. 장례식장[의료시설의 부수시설(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] 나.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	1,000㎡ 이상

○ **【안 제4조(사전고지 대상 지역)】**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공동주택, 단독주택 및 학교 등이 있는 지역을 사전고지 대상 지역으로 정하여 시설 설치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정함.

	구 분	대상 지역	근거 법령
1.	공동주택	·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·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	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
2.	단독주택	·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,000m 이내에 10호 이상 있는 지역	「주택법」
3.	학교 등	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·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· 특수학교 · 각종학교	「유아교육법」 「초·중등교육법」

○ **【안 제5조(사전고지의 내용 등)】** 사전고지에 대지위치, 용도 및 구조, 대지면적, 건축면적 및 연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층수, 최고 높이, 인허가등의 접수 일자 및 담당 부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, 과계 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및 사전고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**【안 제6조(사전고지의 방법)】** 인허가등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고,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 또는 해당 이·통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고지의 기한과 방법을 정하며, 사전고지는 행위자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.

○ **【안 제7조(부서의 지정)】** 갈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, 시설별 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며, 담당부서는 사전고지 실시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함.

○ **【안 부칙】**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함.

□ 종합 의견

○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,

- **사전고지 대상 시설**의 **인가 . 승인 . 허가 . 신고("인허가등")가 접수**되면, 행위자로부터 **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**에 한하여, 시장이 **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**에, **대상 지역 주민**에게 **사전고지를 해야 함**.

○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인용하여,

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동물 관련 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방송통신 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장례 시설 등으로 정하고, 시장이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규정함.

○ 사전고지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,

- 전국 40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며,
- 대상 지역의 범위는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나, 창원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500m(22곳, 55%), 단독주택 1,000m(26곳, 65%)를 적용한 조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다만, 사전고지는 행위자(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) 로부터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.

-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르면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[1]상 인허가등은 법정민원에 해당하며,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

1) 제7조(정보 보호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**민원의 내용**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**누설되지 아니하도록**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민원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,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.

- 따라서 인허가등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해당 민원 내용을 주민에게 사전고지하기는 어려움.
-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[2]에 따라 "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"에 한하여 해당 민원 내용을 사전고지에 이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함.
- 허가 신청 내용의 공개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창원시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을 반영하여,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용

수집·이용 목적	「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사전고지 절차 실시
수집·이용 항목	시설물의 종류, 대지위치, 용도 및 구조, 대지면적, 건축면적 및 연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층수 및 최고 높이
보유기간	사전고지 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

*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귀하께서 제공에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.

○ 시장의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,

-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르면, 사전고지 의무화는 인허가등 처분권자인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, 사전고지를 인허가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운영할 경우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[3] 에 반하여 민원 처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

2)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1. **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**

3) 제6조(민원 처리의 원칙)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다만, 사전고지를 임의규정으로 둘 경우 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져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,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되 행위자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 경우 사전고지는 행위자의 정보이용 동의를 전제로 인허가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, 인허가등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별도의 절차를 추가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○ 종합적으로 볼 때,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지역사회 내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인허가등 신청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사전고지가 불가능하므로,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 예방 및 해결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청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6. **질의 · 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7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8. **심사 결과**: **원안 가결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